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정 관



재미대한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재미대한태권도협회 정관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2007년 6월 25일 제정
 2013년 6월 21일 개정
 2017년 3월 16일 개정
 2019년 6월 22일 개정
 2023년 2월 18일 개정
 2024년 3월 2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재미국대한체육회 정관 제 8 조(중앙경기단체) 및 제 71 조(규정 및 세칙)에 따라 체육회의 중앙경기단체인 재미대한태권도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재미대한태권도협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는 영문명칭을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nited States of America" 라 칭하고 약칭으로는 KTA in USA 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미국 한인 태권도 경기종목을 대표하고 재미국대한체육회 산하 지역체육회 가맹태권도경기단체를 규합하여 지휘·감독하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재미대한체육회 본부가 있는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4 조(법인등기) 본회는 미합중국 연방법과 본부지 주법에 의한 비영리 단체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태권도 경기운영의 기본 방침 심의·결정
2. 태권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3. 태권도 경기대회의 개최·주관 및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육성
4. 각 지회의 지도, 육성 및 감독
5. 각 지회의 대회 개최 및 주관의 승인·지원

6. 미주 한인체전과 한국 소년· 전국체전 및 각종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파견
7. 태권도 세미나, 심판자격증 발급, 심사 교육을 통해 우수 지도자 양성
8. 미주 태권도 지도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 수립· 시행
9. 주미대사배 및 주미 총영사배 태권도대회 주최· 주관
10. 국기원에서 위임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
11. 대한민국태권도협회에서 위임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 발전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 2 장 조 직

제 6 조(조직) 본회는 본부(임원, 분과위원, 위촉위원 등) 및 지역태권도협회(이하“지회”라 칭한다)로 조직한다.

제 7 조(가입) 지회의 가입은 가입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가입된다.

제 8 조(탈퇴) ① 지회의 탈퇴는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② 지회가 본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는 총회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9 조 (권리와 의무) 본회는 재미국대한체육회(이하“체육회”라 칭한다) 대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권리

1. 체육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표결권을 가진다.
2.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② 의무

1. 체육회 정관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 일 이내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수석부회장 1 명
3. 상임부회장 5 명 이하
4. 부회장 약간명
5. 전무이사 1 명
6. 재무 1 명
7. 이사회 30 명 이하 (회장, 수석·상임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재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
8. 감사 2 명

제 11 조(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되, 본회 대의원총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기여, 주요 대회성적, 단체 평가등이 우수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회장 임기의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 선출 총회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의 임기 제한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회, 재무, 분과위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⑥ 회장,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 전무이사, 재무, 이사회, 분과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하고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⑧ 본부임원, 분과위원, 위촉위원은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 할 수 있다.
- ⑨ 당연직(지회) 대의원의 임기는 소속단체 대표자 자격이 유효할 때 까지이다.
- ⑩ 본부대의원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으며 본부조직의 직책을 유지할 때 까지이다.
- ⑪ 회장의 임기는 제 12 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당선을 확정 • 선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제 12 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 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 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 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 2 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 13 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본부임원의 선임)

- ① 부회장, 전무이사, 재무, 이사회,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추천권한을 행사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 년으로 연임에 제한이 없다.
- ③ 본회 본부 또는 지회 임원은 회장을 제외한 본회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④ 본회는 지리적 특성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이사회 제도를 상설 • 운영한다.
- ⑤ 임원의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는 재미국대한체육회에 14 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명예회장, 고문 • 자문위원 위촉)

- ① 명예회장 • 고문 •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②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는 상임고문으로 위촉한다.
- ③ 명예회장, 고문, 자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16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이후에도 당연히 선임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① 미국에서 최근 만 3 년(1,095 일)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이후에도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자격이 상실된다.
 1. 미성년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본회, 기타 소속단체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미화 \$3,000.00 (한화 300 만원)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미화 \$3,000.00 (한화 300 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1 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1 년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 또는 제명된 사람

6.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동포사회에 지탄을 받은 자로 본회 발전을 저해한 자
 7. 국기원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해임된 사람
 8. 역대 체육단체 회장선거 등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회장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선거 관계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유사단체 검직을 원할 경우 본회의 장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1. 본회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본회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본회의 업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7 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 16 조 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인준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 회 이상 이사회 및 총회에 불참하였을 경우
- ③ 지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본회 상별위원회 또는 이사회안건으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기타 총회의 의결로서 특별히 정할 수 있다.

제 18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전무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④ 재무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본회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⑤ 이사회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⑦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부회장의 자문기구이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⑧ 임원은 정관에 명시한 임기가 만료되었을지라도 차기 임원이 취임하기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5 장 각종위원회

제 19 조(각종위원회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상설 • 운영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 및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조직 •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1. 기술위원회
- 2. 경기위원회
- 3. 상벌위원회
- 4. 교육위원회
- 5. 재정위원회
- 6. 심판위원회
- 7. 코치위원회
- 8. 여성위원회
- 9. 도장위원회
- 10. 홍보위원회
- 11. 대외협력위원회
- 12. 차세대위원회
- 13. 장애인위원회
- 14. 정관개정위원회

③ 본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 1 인
- 2. 고문 약간인
- 3. 자문위원 약간인

제 20 조 (분과위원회 직무)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에서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① 기술위원회
 - 1. 각종 분과위원회 총괄 조정
 - 2. 업무를 사무국과 사전 조정한다.
- ② 경기위원회
 - 1.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경기운영 관장
 - 2. 각종 대회결과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보고

- ③ 상벌위원회
 - 1. 본회 부회장중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 2. 본회 정관 제 11 장(포상규정) 및 제 12 장(징계규정)에 의해 포상 및 징계대상자를 선별 · 심의
- ④ 교육위원회
 - 1. 도장 운영, 지도자 교육 세미나등을 통해 우수 지도자 양성
 - 2. 본회 총회를 통해 결정 된 각종 교육 세미나를 통해 자격증을 발부
- ⑤ 재정위원회
 - 1. 본회의 수익 사업 및 재정 확충 업무
- ⑥ 심판위원회
 - 1. 본회가 주최 ·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심판운영을 관장
 - 2. 심사 · 심판 교육을 통한 자격증 발부
- ⑦ 코치위원회
 - 1. 코치 세미나를 통해 우수한 지도자 양성
 - 2. 본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 본회 대표 감독 · 코치 임명
- ⑧ 여성위원회
 - 1. 여성 태권도인의 저변활동 활성화
 - 2. 여성 태권도 지도자 양성
- ⑨ 도장위원회
 - 1. 각 지역 도장관리
 - 2. 태권도인들의 신속한 경조사 참여를 더욱 공고히 하여 결속 강화
- ⑩ 홍보위원회
 - 1. 본회의 역사편찬 및 각 행사 자료를 출판 · 홍보
 - 2. 각종 대회 홍보물 제작 · 홍보
- ⑪ 대외협력위원회
 - 1. 본회의 대외적인 교류를 위해 기획
 - 2. 해외동포 태권도협회와 업무관계 공조
- ⑫ 차세대위원회
 - 1. 한인 청소년들에게 각종 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의식 함양
 - 2. 태권도를 통해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
- ⑬ 장애인위원회
 - 1. 장애인 태권도를 통해 믿음과 희망과 꿈을 고취
 - 2. 장애인 태권도를 통해 한인 동포 사회의 봉사 참여 의식을 고취
- ⑭ 정관개정위원회
 - 1. 본회 정관 제 · 개정에 관한 업무

- 제 21 조(임원의 보수)** ①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실비는 선집행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반드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대의원총회

제 22 조(구성) 대의원 총회(이하'총회'라 한다)는 당연직 대의원, 본부 대의원, 위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당연직 대의원

1. 본회의 가맹 • 승인된 지회는 1 인의 대의원을 본회에 둔다.
2. 지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이다.
3.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본부 대의원

1. 본회의 회장, 상임부회장, 전무이사는 본부 대의원이며 그 자격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2. 지회의 단체장이 본부대의원 직책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직 대의원 자격만 주어진다.

③ 위임 대의원

1. 당연직 대의원의 권한을 본정관 제 22 조제 1 항에 의한 위임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2. 위임받을 수 있는 대의원 자격은 지회의 부회장으로 한다.
3. 위임 대의원의 위임장은 총회 개최 3 일전까지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임 대의원의 자격은 소집된 당 총회에만 한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 23 조(대의원 구성방법) 대의원 총회(정기 및 임시총회 포함) 개최시마다 구성하며, 그 임기는 다음총회 개최 전일까지 한다.

제 24 조(기능)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 (또는 세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 및 결산 관한 사항
4. 선거관리 위원장 인준 동의에 관한 사항
5. 지회 가입 • 승인 및 해산 • 복권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 25 조(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0 일 이내에 본회의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이사회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4. 제 18 조제 6 항제 4 조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 3 항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3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회,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회,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⑤ 총회 소집을 늦어도 개최 7 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 한 후 14 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⑦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여의치 못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 2.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때
 - 3. 재적이사회 3 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때

제 26 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7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8 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 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해당 임원을 즉시 해임된다.

제 7 장 이사회

제 29 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재무, 이사회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② 이사회는 분과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 30 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결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개정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상정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괄
8. 제반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심의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1 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부회장·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3 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

제 32 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① 이사회 소집권자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재미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회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33 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회의 과반수 찬청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이사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해결] 과반수 출석의 정의

과반수 출석이라 함은 재적 이사회 정원이 12 명이라고 한다면 6 명이상의 아닌 7 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회의가 성립됨을 말한다.

제 34 조(상임이사회 설치운영) 본회는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회 정관 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①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상임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또한,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한다.
-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 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7 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 ④ 상임이사회 운영과 의결의 효력은 이사회와 같고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이사회에서 미리 정할 수 있다.
- ⑤ 상임이사회 의결 사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이사회가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한다.
- ⑥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5 인이내로 구성한다.

제 35 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회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8 장 지역태권도협회 규정

제 36 조(설치 목적) 본회의 사업목적 및 수행을 위하여 미국 각 주 또는 주요 도시에 지역태권도협회(이하 "지회"라 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7 조(명칭 및 주소) 지회의 명칭은 재미대한태권도협회 OOOO 지부로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Taetaekwondo Association of OOOO 으로 표시하고 사무소는 지역체육회 소재지 또는 지회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38 조(권리와 의무) 지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권리
 - 1. 본회의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표결권을 가진다.
 -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 3. 본회가 주최 •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② 의무

1. 본회 정관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지회의 사업계획서, 임원변동 내역서, 수지 예산서,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30 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승인된 지회가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하지 않았거나 총회보고를 아니할때는 본회 절차에 의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4. 본회 명칭(영문포함) 또는 로고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회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5.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최주관하였을 때에는 행사 종료 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서를 30 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회참가 및 외부단체와 협약 또는 초청 관계를 본회오하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본회 규정에 따른 년 지회비(미화 \$200)를 매년 1 월 31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지회는 의결권, 선거권 및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39 조(조직) ① 지회는 그 단체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조직한다.

② 지회는 집행부와 태권도장이 최소 3 개이상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지역체육회에 가입을 완료한 한인 태권도 단체 및 개인으로 조직한다.

제 40 조(가입) ① 본회에 지회로 가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체육회 가입승인서 1 부
2. 지회장 이력서 1 부
3. 집행부(임원) 명단 1 부
3. 단체결성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1 부
4.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 1 부
5. 단체결성 총회 사진 등 기타증빙서류 1 부

② 가맹 승인은 본회 이사회가 심의하며 총회 의결로서 최종 확정 • 승인된다.

제 41 조(탈퇴) ① 등록단체(개인)의 탈퇴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등록단체(개인)가 해당 경기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체 이사회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 42 조(등록선수 등 회원자격)

① 재미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부모중 1명(1/4) 이상이 한인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의 소속 및 지역
 - 1. 모든 회원은 각 소속단체의 소정의 서류에 의하여 등록접수 한 지회(단체)에 소속된다.
 - 2. 등록된 회원이 만 2년 이상 소속 지회(단체)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3. 회원의 거주지가 소속 관할지역 소재지보다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 보다 멀 경우 (25 마일 이내는 제외) 관할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 4. 회원은 1개 지회(단체)에 소속되며, 이중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 5. 소속 지회(단체)에서 타 지회(단체)로 이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가. 전 소속 지회(단체)에서 이적동의서에 의하여 이적할 수 있다.
 - 나. 거주지 이사회에 의한 이적은 이사회 거리가 50 마일 이내 일 때에는 전 소속(지회)단체의 이적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 다. 소속단체에서 만 2년 이상 지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지회(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단, 전 소속지회(단체)에서 활동기간의 의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회원 의무 및 권한
 - 1. 본회와 각 소속 지회(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출전할 수 있으며, 대표 팀 선발 대상이 된다.
 - 2. 본회와 각 소속 (지회)단체의 규정 및 의결한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3. 본회 또는 소속 지회(단체)의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진다.

제 43 조(지회 지도육성)

- ① 본회는 지회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회의 활동을 권장 •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지회가 본회 정관, 지시사항과 규정의 위반, 지회장의 결원, 임원간의 분쟁, 재정 악화, 또는 승부조작 등 단체 운영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회는 본회에서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본회에서 직접 관리 • 운영할 수 있다.

제 9 장 사 무 국

- 제 44 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에는 전무이사 1 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45 조(사무국 구비서류) ① 본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처리 • 보관 • 관리한다.

1. 본회 정관 및 선거시행 세칙
 2. 본부 임원, 분과위원장, 이사회, 고문, 자문위원 명단
 3. 지회정관 및 지회임원 명단 등 지회관련 서류
 4. 재정 출납장부, 통장, 은행 거래 내역 서류
 5. 물품보유현황
 6. 각종 회의록
 7. 사업실적 기록부
 8. 각종 공문서 발송 및 접수 기록 등
- ② 모든 서류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모두 공개하고, 서류를 열람 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제 46 조(자체 총회에 대한 보고서) ① 회장은 해당 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
때에 제출 • 보고한다.

1. 회계 보고서(수입 및 지출결산서)
2. 물품 보유현황 보고서
3. 사업 실적 및 계획 보고서
4. 지회 및 단체장 변동사항 보고서
5. 본부임원 변동 사항 보고서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제 47 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3.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잉여금
 4. 기금
 5. 운영재산중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제 1 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 48 조(재원) 본회가 제 5 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임원 및 지회의 회비(가맹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금

3. 공공단체의 지원금 • 보조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재미대한체육회 보조금
7. 대회 개최 등 사업 수입금
8. 기타 수익금

제 49 조(재산의 관리)

- ① 본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 • 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그 누구도 본회 명의를 도용하여 모금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50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51 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의 연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2 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 회 실시한다.

- ② 본회는 지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 53 조(대회비 관리 등)

- ① 본회 주최 •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참가비
 1. 본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대회 및 행사에 단체 또는 개인이 내는 참가비이다.
 2.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30 일 이내로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
 3. 정기총회에서 행사(대회) 결과 및 결산내역을 행사별로 별도 보고한다.
 4. 미주체전의 경우 90 일 이내로 결산 후 이익금은 미주체전 법에 명시된 계산법에 따라 재미대한체육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 ② 벌금
 1. 모든 징계에는 벌금 책정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징계 확정에 의한 벌금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
 3. 징수된 벌금은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4. 징계기간이 해제 되었을지라도 벌금을 완납하여야 징계가 종료된다.
- ③ 찬조금 및 기부금

1. 모든 기부금은 그 기부자의 명시적 목적에 사용하고 잔여금은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2. 찬조금은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 ④ 사업수입금
1. 본회는 제 2 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5 조(사업)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한다.
 2. 사업별로 30 일 이내로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
 3. 정기총회에서 사업별 결과 •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자산관리는 비영리단체 운영원칙에 준한다.

제 54 조(예산집행) 본회의 예산집행은 본회 이사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집행한다.

- ① 모든 지출은 “재미대한태권도협회” 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집행의 최종 결정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 ③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장 승인에 따라 우선 지출하고 (미화 \$50 이내) 일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지출은 본회 수표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다.
- ⑥ 회계담당자(재무) 수입 및 지출내역서, 영수증 등 예산집행 증빙자료를 기록 • 보관한다.

제 11 장 포상규정

제 55 조 (포상대상)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본회와 태권도 발전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태권도인 및 단체
2. 본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 외부인사 및 단체
3. 기타 태권도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로자

제 56 조 (포상구분) 포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포상한다.

- ① 대내포상(공로상 또는 공로패)
- ② 대외포상(감사장 또는 감사패)

제 57 조 (포상추천 및 심사)

- ① 포상 추천은 대의원 및 본회 임원의 추천으로 한다.
- ② 포상 심사는 본회 상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회의결로써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 ③ 본회 회장은 직권으로 포상자를 선정 • 수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장 징계규정

제 58 조 (징계의 구분) 다음과 같이 징계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 ① 퇴출
- ② 직위 해제
- ③ 직무 정지
- ④ 출전 정지
- ⑤ 벌금
- ⑥ 봉사
- ⑦ 집행유예
- ⑧ 경고

제 59 조 (징계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개인)는 징계대상이 된다.

1. 본회의 제반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 하였을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제 60 조 (징계건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를 건의 할 수 있다.

1. 본회 이사회와 대의원 중에서 3 인 이상의 서명으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2. 대회 및 행사를 주관한 단체 또는 지회 보고서에 따라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모든 징계 건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회에 상정하여 이를 따로 정할수 있다.

제 61 조 (퇴출) ① 본회의 승인된 단체(개인)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퇴출 대상이 된다

1. 본회의 정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2. 승인된 단체(개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지휘 • 감독을 거부할 때
3. 내부분쟁으로 파행이 지속되어 건전한 체육풍토를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초래 할 때
4. 본회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등 의무를 불이행하고 파행이 지속되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단체
5. 납입금을 2 회 이상 미납하고, 이후에도 납입의사가 없는 경우
6.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등 본회의 회의에 2 년이상 불참할 경우
7. 총회의 의결로서 퇴출 대상이 된다.

제 62 조 (직위해제, 해임, 직무정지 및 자격정지)

- ① 선출임원(회장, 감사)의 직위해제(해임) 안은 재적 대의원 3 분의 1 의 동의로 제의되고, 재적 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이를 결정한다.
- ② 회장이 매년 3 월까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되지 않았을 때에는 4 월 1 일부터 회장은

자동으로 직무정지 된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4 월 10 일 전까지 정기총회 소집을 공지하지 않을 때에도 직무정지가 된다.

- ③ 본회의 지회는 의무 납부금 미납시 완납할 때까지 그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미납금 완납과 동시에 그 자격이 회복된다.

제 63 조 (징계 심의 및 의결)

- ① 징계심의는 본회 소청 · 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한다.
- ② 징계확정은 본회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③ 회장, 감사, 명예회장, 상임고문의 징계는 소집된 총회에서만 의결 확정되며 기타 징계는 서면결의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 64 조 (재심 및 사면 · 복권)

- ① 징계를 받은 자는 본회 소청 상벌위원회에 1 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재심, 사면 및 복권은 소청 상벌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 1. 사면 복권은 본회 대의원 중 출석 대의원의 2 분의 1 (과반수) 이상 동의하였을 때
 - 2. 회장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3. 총회에서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면 및 복권이 된다.
- ③ 모든 신청은 서면으로만 인정되며 시행된다.

제 13 장 선거관리

제 65 조 (선거관리) 선거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집행 ·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① 회장은 선거일 45 일 이전에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 ② 선거관리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서 추천을 통해 임명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간사 1 인을 포함하여 5 인 이내로 한다.

제 66 조 (회장의 업무개시)

- ① 회장의 업무개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의 당선 확정 · 선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 ② 신임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를 구성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67 조 (업무 인수 · 인계)

- ① 구 집행부는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재정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업무를 새집행부에 일주일 이내에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회장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그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
- ③ 구 집행부 임원은 새 집행부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에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새 집행부 임원의

임명 즉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인수 • 인계 하여야 한다.

제 68 조 (규정) 선거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본회 정관 및 재미대한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세칙)

- ① 본회 정관에 의거하여 제 · 개정된 지회규정, 선거운영규정, 상별규정, 대회운영규정 및 경기규정 등은 본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규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사한 결과 개 · 수정 · 삭제 및 삽입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결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본 정관 이외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미대한체육회 정관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상례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2 조 (준용규정)

- ① 본 정관은 각 지회규정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의 규정을 이 정관에 맞게 개정하지 아니하여 이 정관과 당해 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정관을 따라야 한다.
- ② 본회 및 산하 단체는 비영리단체의 운영형식으로 한다.

제 3 조 (시행일)

- ① 본 정관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2007 년 6 월 25 일)
- ②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9 년 6 월 22 일)
- ③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3 년 2 월 18 일)
- ④ 개정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4 년 3 월 23 일)